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1
----------	-----

2025. 3.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5. / 원주영 의원 등 13명
- 나. 회부일자 : 2025.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제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2호 및 제3호)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안 제19조)
 -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 외 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본 안건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2
----------	-----

2025. 3.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5. / 김동훈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5.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감독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15조)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착공 전, 시의회에 공사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7조~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공사내용을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공사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의안 번호	659
----------	-----

2025. 3.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3. 5.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예산과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환경정책과
·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환경정책과
·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후에너지과
·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하수처리과
·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하수처리과
·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와부읍

나. 주요내용

(1)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공사가 활용 불가한 현물출자 토지를 시에 환원함으로써 세금 등 도시공사 재산 관련 부대비용 절감
- 사업내용 : 출자토지 8필지에 대해서 시 환원 추진
 - 진접읍 장현리 2개 필지 : 관련법에 따른 개발사업 제한 부지
 - 오남읍 오남리 4개 필지 :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422호 부지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2개 필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제보호구역

구분	면적	출자금액(천원)	환원사유	환원시기	
계	총 8개 필지 / 154,851㎡ / 금9,818백만원			2025년 내 추진	
1	진접읍 장현리 산25-1 *분할 후 기준	84,355㎡	3,626,22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빈묘(문화유산, 1991년 지정)] ⇒ 개발사업 제한구역
2	진접읍 장현리 산25-16	57,719㎡	3,943,896		⇒ 개발사업 제한구역
3	오남읍 오남리 산72-8	7,168㎡	1,146,880		○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422호 부지' 해당
4	오남읍 오남리 300	1,015㎡	426,808		⇒ 도시관리계획 확정, 환원 추진
5	오남읍 오남리 386-3	579㎡	334,952		○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422호 부지와 인접, 추후 공원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6	오남읍 오남리 386-11	502㎡	290,407		○ 소규모 필지로 개발사업 진행 불가
7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010	2,459㎡	33,19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의거 통제보호구역(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 10km)
8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015	1,054㎡	15,810	⇒ 개발행위 등 사업추진 불가 토지	

나) 기대효과

- 자본금(현물) 감자 시 도시공사 재산 관련 납부세액 年 약 292백만원 절감

예상 ※ 2024년 환원 추진결과 : 약 3.3억원[재산 관련 세액 총계 6.6억→3.3억] 경감

- (감자 시) 종합부동산세(259,074천원), 재산세(33,593천원) 경감
- (감자 후) 재산 관련 납부세액: 34,893천원(종부세 18,017천원 / 재산세 16,876원)

구분	경감 예상내역			
종합 부동산세	2024년 납부내역(A)	반납시 증부세액(B)	경감내역(A-B)	
	277,092,120원	18,017,560원	259,074,560원	
재산세	2024년 납부내역(A)	반납시 재산세액(B)	경감내역(A-B)	
	50,468,870원	16,875,670원	33,593,200원	
※ 경감 세부내역(2024년)				
재산세	구분		세부내역	비고
	1	진접읍 장현리 산25-1	19,303,124원	
	2	진접읍 장현리 산25-16	7,492,009원	
	3	오남읍 오남리 산72-8	1,857,841원	
	4	오남읍 오남리 300	2,313,663원	
	5	오남읍 오남리 386-3	1,288,750원	
	6	오남읍 오남리 386-11	1,337,813원	

(2)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1(이패동 521-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03. ~ 2028.11. ※ 추진사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가능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a*)
- * BTO-a방식 :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량 : 소각시설 250톤/일
- 부지면적 : 19,754m²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사업비	기타
금액	197,919	12,700	185,219	-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나) 기대효과

- 관내 발생 폐기물의 통합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소요액						
	합 계	2024이전	2025	2026	2027	2028	
합 계	197,919	18,715	48,514	57,235	57,236	16,219	
사업비	소 계	185,219	12,015	42,514	57,235	57,236	16,219
	국 비	39,875	2,782	4,970	14,600	15,100	2,423
	도 비	11,962	794	1,491	4,380	4,530	767
	시 비	43,201	1,987	3,479	17,865	18,214	1,656
	원 인 자	20,000	6,451	2,458	4,987	3,988	2,116
	민간자본	70,180	-	30,116	15,403	15,404	9,257
토지 보상	소 계	12,700	6,700	6,000	-	-	-
	원인자	12,700	6,700	6,000	-	-	-

구 100만의 자주적 도시기반 확보

-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3)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경강로163번길 44(이패동 521-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03. ~ 2030.04. ※ 추진사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가능
-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a*)
- * BTO-a방식 :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 업 량 : 통합바이오440톤/일, 재활용100톤/일, 대형폐기물100톤/일
- 부지면적 : 56,877㎡(시설 지하화 후 상부 공원 조성 : 33,249㎡)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사업비		
			통합바이오	재활용	대형
금액	251,179	15,000	178,214	38,348	19,617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소요액								
	합 계	2024이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251,179	6,416	11,172	16,800	48,708	54,708	54,707	58,668	
사업비	소 계	236,179	6,416	3,172	9,800	48,708	54,708	54,707	58,668
	국 비	68,691	3,583	2,214	6,100	10,300	14,500	14,500	17,494
	도 비	10,568	607	287	1,110	1,650	2,190	2,190	2,534
	시 비	25,290	2,226	671	2,590	3,850	5,110	5,110	5,733
	원 인 자	70,000	-	-	-	17,500	17,500	17,500	17,500
	민간자본	61,630	-	-	-	15,408	15,408	15,407	15,407
토지 보상	소 계	15,000	-	8,000	7,000	-	-	-	-
	원인자	15,000	-	8,000	7,000	-	-	-	-

나)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를 통해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 부응

(4)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소도시 조성
- 위치 : 남양주시 이패동 29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01. ~ 2028.12. ※추진사항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가능
- 사업량
 - 수소 생산시설(2톤/일) 및 공급 배관(3km) 설치
 - 통합안전운영 관리센터 구축,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설치
- 규모 : 면적 15,762㎡
- 소요예산 : 56,000백만원(부지매입비 16,000백만원, 사업비 40,000백만원)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4년 이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56,000	6,500	26,000	10,000	10,000	3,500
국 비	20,000	3,250	5,000	5,000	5,000	1,750
도 비	6,000	975	1,500	1,500	1,500	525
시 비	30,000	2,275	19,500	3,500	3,500	1,225

나) 기대효과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공급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5)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가) 사업개요

- 위 치 : 남양주시 평내동 547-1번지 일원, 수석동 39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70,000m³/일 설치(신설1, 증설1)
 -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 : (신설)41,000m³/일[토지면적 : 25,455m²]
 -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 : (증설)29,000m³/일[토지면적 : 23,949m²]
- 사업기간 : 2021.07. ~ 2028.12.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합 계	부지매입비	건설사업비			
			계	공사비	조사·설계비	기타
금액	221,686	22,645	199,041	174,767	8,409	15,864

※ 제3차 제안공고 상 추정 총사업비(221,686백만원) 기준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221,686	11,323	46,342	110,527	53,494
국 비	-	-	-	-	-
도 비	-	-	-	-	-
시 비	161,974	11,323	25,402	84,731	40,518
민간사업비	59,712	-	20,940	25,796	12,976

※ 작성기준 : 채무모델 기준

○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안) ※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설비 등 사업비)

【평내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 취득토지 : 25,356㎡(평내동 547-1번지 등 11필지)

구 분	위 치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준가격(원)	소유구분 / 개별공시지가
계			32,882	25,356	2,193,969,210	
취득토지	평내동 544-1	철	274	274	9,370,800	국유지 34,200원/㎡
	평내동 544-2	답	5,547	5,523	780,952,200	사유지 141,400원/㎡
	평내동 545-1	답	119	119	11,745,300	사유지 98,700원/㎡
	평내동 545-2	철	827	827	28,283,400	국유지 34,200원/㎡
	평내동 547-1	과	11,330	11,330	939,257,000	사유지 82,900원/㎡
	평내동 산7-3	철	4,860	2,120	72,504,000	국유지 34,200원/㎡
	평내동 산7-7	임	2,380	325	1,303,250	사유지 4,010원/㎡
	평내동 산7-10	임	2,243	2,243	9,084,150	사유지 4,050원/㎡
	평내동 산7-12	임	938	938	3,798,900	사유지 4,050원/㎡
	평내동 산8-2	철	4,265	1,558	336,839,600	국유지 216,200원/㎡
	평내동 산8-5	임	99	99	830,610	사유지 8,390원/㎡

※ 전체 토지면적(25,455㎡) 중 사유지(99㎡) 제외

- 시설계획

층 별	연 면 적(m ²)	용 도	비고
지하2층	839.20	하수처리시설	기준가격 (116,624백만원)
지하1층	7,816.93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1,370.52	실험실, 전시홀, 전기실 등	
지상2층	989.24	중앙제어실, 사무실 등	
합 계	11,015.89		

【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 취득토지 : (최초시설)39,081 m²

(증설 후)63,030m²[(증) 23,949m², 수석동 382-5번지 등 18필지]

※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 결정 예정[(당초) 65,000m² → (변경) 63,030m²]

구 분	위 치	지목	공부면적(m ²)	편입면적(m ²)	기준가격(원)	소유구분 / 개별공시지가
계			30,092	23,949	10,712,837,800	
취득토지	수석동 382-5	전	1,009	74	59,636,600	사유지 805,900원/m ²
	수석동 385-38	전	6,497	6,497	2,151,156,700	사유지 331,100원/m ²
	수석동 385-37	전	496	496	172,955,200	사유지 348,700원/m ²
	수석동 385-24	전	1,002	1,002	349,397,400	사유지 348,700원/m ²
	수석동 394	잡	2,888	2,888	2,374,802,400	사유지 822,300원/m ²
	수석동 394-1	잡	1,594	414	54,730,800	공유지 132,200원/m ²
	수석동 395	잡	2,426	1,373	1,015,608,100	사유지 739,700원/m ²
	수석동 396-1	전	1,447	1,447	433,810,600	사유지 299,800원/m ²
	수석동 397	잡	1,768	1,272	940,898,400	사유지 739,700원/m ²
	수석동 397-1	잡	1,323	1,323	1,087,902,900	사유지 822,300원/m ²
	수석동 398	천	3,090	3,085	968,381,500	사유지 313,900원/m ²

취득토지	수석동 398-4	천	1,325	1,325	394,585,000	사유지 297,800원/m ²
	수석동 398-2	천	1,424	1,424	446,993,600	사유지 313,900원/m ²
	수석동 398-3	천	200	200	62,780,000	사유지 313,900원/m ²
	수석동 402-1	전	1,931	212	28,026,400	공유지 132,200원/m ²
	수석동 402-2	전	298	298	89,340,400	사유지 299,800원/m ²
	수석동 402-3	전	709	579	76,543,800	공유지 132,200원/m ²
	수석동 417-2	전	665	40	5,288,000	국유지 132,200원/m ²

- 시설계획

층 별	연 면 적(m ²)	용 도	비고
지하2층	621.35	하수처리시설	기준가격 (82,417백만원)
지하1층	5,817.85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702.48	실험실, 전기실 등	
합 계	7,141.68		

나) 기대효과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발생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정부 주거정책 부합 및 개발사업 추진 기반 마련

(6)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가) 사업개요

○ 목 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2.12. 승인) 상 시설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량[한강유역청 제2022-192호(2022.10.)]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m³/일) 및 개량(45,000m³/일)

시설명	사업위치	계(m ³ /일)	증 설(m ³ /일)	개 량(m ³ /일)
	3개소	53,000	8,000	45,000
별내	별내동 927번지	32,000	5,000	27,000
진접	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17,000	3,000	14,000
가운	다산동 689번지	4,000	-	4,000

○ 사업기간 : 2024.03. ~ 2030.0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합 계	부지매입비	건설사업비			
			계	공사비	조사·설계비	기타
금액	122,570	-	122,570	108,649	5,425	8,496

※ 건설사업비 : 사업제안서 상 건설사업비(122,570백만원, 불변가) 기준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122,570	17,941	35,247	31,319	33,819	4,244
국 비	28,172	2,883	8,502	7,590	8,197	1,000
기 금	11,269	1,153	3,401	3,036	3,279	400
도 비	3,757	384	1,134	1,012	1,094	133
시 비	18,849	1,929	5,689	5,078	5,484	669
원 인 자	17,287	1,769	5,217	4,657	5,030	614
민간사업비	43,236	9,823	11,304	9,946	10,735	1,428

※ 작성기준 : 재무모델 기준

【별내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및 개량)】

- 토지면적 : 21,867.40m²(별내동 927번지)
- 시설계획

층 별	연 면 적(m ²)			용 도	비 고
	계	기 존	금회(증설)		
지하2층	323.32	248.62	74.70	하수처리시설	기준가격 (56,633백만원)
지하1층	2,330.66	718.08	1,612.58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1,198.79	773.13	425.66	관리동, 야외화장실, 계단실 등	
지상2층	1,045.50	882.66	162.84	관리동, 전기실 등	
지상3층	335.81	335.81	-	관리동	
합 계	5,234.08	2,958.3	2,275.78		

【진접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및 개량)】

- 토지면적 : 19,860.8m²(진접읍 금곡리 1085번지)
- 시설계획

층 별	연 면 적(m ²)			용 도	비 고
	계	기 존	금회(증설)		
지하3층	206.95	206.95	-	하수처리시설	기준가격 (45,682백만원)
지하2층	1,491.28	1,316.08	175.20	하수처리시설	
지하1층	5,348.52	4,290.72	1,057.80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1,512.90	993.2	519.70	관리동, 호퍼실, 계단실 등	
지상2층	689.99	488.7	201.29	관리동, 전기실 등	
합 계	9,249.64	7,295.65	1,953.99		

【가운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 토지면적 : 5,820.20㎡(다산동 689번지)
- 시설계획

층 별	연 면 적(㎡)			용 도	비 고
	계	기 존	금회(증설)		
지하3층	97.06	97.06	-	하수처리시설	기준가격 (20,255백만원)
지하2층	1,143.19	1,017.03	126.16	하수처리시설	
지하1층	1,716.10	1,501.73	214.37	하수처리시설	
지상1층	821.21	797.12	24.09	관리동, 계단실	
합 계	3,777.56	3,412.94	364.62		

나) 기대효과

- 별내·진접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안정적인 처리 가능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대상 지역의 수질기준 준수 및 방류하천 수질보전

(7)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가) 사업개요

- 목 적 :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772번지
- 사업규모 : 마을회관 신축(지상1층, 연면적 231㎡)
- 사업기간 : 2023. 2. ~ 2025. 1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
 - 건축비 : 980백만원, 설계비 : 20백만원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4년	2025년
계	1,000	20	980
국 비	-	-	-
도 비	-	-	-
시 비	1,000	20	980

나) 기대효과

- 농촌지역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효과 기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1)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건에 대해서는 영빈묘 등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된 진접읍 장현리 산 25-1번지 외 1필지와, 오남읍 오남리 산72-8 외 3필지는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422호 부지’에 해당되거나 인접한 토지로 소관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1010 외 1필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으로 개발행위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토지로 토지 활용 계획 수립이 어려워 우리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환원 대상이 되는 토지들은 도시공사로 출자되어 2024년 기준 도시공사 출자 100필지의 토지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로 약 2억 7천만원,

재산세로 약 5천만원이 부과되었으며, 금번 8필지의 반환에 따라 각각 2억5천9백만원, 3천3백만원 등 연간 총 2억9천2백만원의 납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 다음으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패동 521-16번지 일원에 1일 250톤 처리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사업은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중단 및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자원회수시설 내 전망대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마련과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 다음으로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본 안건은 관내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자원순환시설은 다산신도시 인근 및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왕숙신도시 등에서 배출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원순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1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00m 가량의 전망탑형 굴뚝과 지상공간이 시민 편의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 다음으로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0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623억원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본 조성사업은 신도시 내 공공주택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수소생산 및 공급설비, 통합안전운영 관리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지는 인접부지에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위치하여 친환경 수소 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바이오가스의 공급이 용이하며, 수소 생산시설에 있어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 다음으로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계획인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평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 및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평내·지금처리시설에 1일 처리용량 7만 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신증설 물량이 기 반영되었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우리시 계획인구의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해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3자 공고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시 제안사의 출자 구성, 시공 실적 및 기술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 다음으로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 처리 및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추진하는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사항 및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부터 준공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후에도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

- 다음으로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건에 대해서는, 기존 마을회관 건립후 36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큰 조안2리 마을회관을 주민 지원사업 예산으로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마을회관 건립시 공사 변경과 사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2025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661
----------	-----

2025. 3.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3. 5.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남양주문화재단
- 신규 출연금 : 금977,000,000원
- 출연내용: 2025년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구분	예산액(원)	내용
계	977,000,000	
기본재산	500,000,000	- 기본재산 (설립 자본금)
문화재단 운영	477,000,000	-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 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남양주문화재단의 설립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재단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사업 및 인력관리 방안 등 운영 방향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2
----------	-----

2025. 3. 17.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3. 5.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5. 3. 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동면에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쉼터 관련 규정 별도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1조(이용자) 조문 중 청소년 쉼터 이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삭제(제11조)
- 수동면 신규 청소년시설 설치 신설(별표 1)
- 기존 시설사용료를 신규 편그라운드에도 적용키 위해 조문정리(별표 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개정안은 남양주 동북부 권역의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수동면에 새로이 설치되는 ‘편그라운드 수동’의 운영 근거를 마련

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표 1에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명단에 신설된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추가하였고, 별표 2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9일 제정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쉼터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남양주 청소년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